

제 1602 호  
1991.10.15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이 해 원  
편집인 : 공 보 관 이 상 신  
전 화 : 731-8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 시 보

## 차 례

- 고 시
  - 제 1991-298 호 수입단미사료성분등록 ..... 3
  - 제 1991-299 호 법령위반자가용자동차 : 채료부과기준개정고시 ..... 3
- 공 고
  - 제 1991-280 호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공람공고 ..... 4
  - 제 1991-281 호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안기준에대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 ..... 4
- 구 고 시
  - 제 1991-17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저적고시(용산) ..... 12

(이편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남북한 유엔가입 통일로 꽃피우자”  
4351

● 구 공 고

제 1991-115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구로) .....	18
제 1991-116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구로) .....	18
제 1991-118 호	도시계획사업(도보) 실시계획공람공고(서대문) .....	18

● 사 령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1-298호

수입단미사료성분등록

사료관리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수입단미사료(탄산수소나트륨)의 성분등

2. 수입등록사료(1종)

중국 XIAMEN CHEMICAL COMPANY 제품

등록번호	사료종류	사 료 명 칭	분자식	순 도	사 료	
					성분명	성분량
서울-182	수입단미사료	탄산수소나트륨 (광물질첨가물)	NaHCO <sub>3</sub>	99% 이상	나트륨	27% 이상

●서울특별시고시제1991-299호

법령위반자가용자동차과태료

부과기준개정고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91.1.29)에  
의거 법령위반 자가용자동차 과태료부과기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위 반 내 용	회 수	과 태 료
법 제56조(사용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1회	100,000원
	2회	500,000원
	3회 이상	1,000,000원
법 제71조(자동차표시)의 규정에 위반한 자	1회	50,000원
	2회	250,000원
	3회 이상	500,000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91.11.1부터 시행합  
니다.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 10. 14

서울특별시장

1. 수입등록업체

- 업체명: (주)이현무역
-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58
- 대표자: 임정진

준(서울특별시고시 제616호, 88.7.13)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1. 10.

서울특별시장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 위반행위  
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를 적용합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1-280호

도시철도건설 특별사업계획공람공고

1. 도시철도법 제4조제8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제정 도시철도 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모자 하는 서울지하철 제7,8호선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특별

- 제4조제8 제2항, 제3항 및 특별시행령 제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송달합니다.
- 2.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의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통지할 것이다. 피수필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가. 도시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노선명	지·종점	도시철도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비고
제7호선	도봉~화양 18.3km	도봉동, 상계동, 하계동, 공릉동, 북동, 중계동, 연동동, 양곡동, 근각동, 불광, 모란동, 화양동	
제8호선	잠원~상암 15.5km	신원동, 석촌동, 송파동, 가락동, 문정동, 양지동, 상암시 북동동, 산성동, 관덕동, 신원동, 수련동, 역수동.	

- 나. 사업시행자 명칭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빙도1가 31번지 서울특별시청 이해원
-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사업계획 승인일)~93.12.31까지
- 라. 공람기간: 91.10.18~91.11.16(30일간)
- 마.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지하철도건설본부 선·감리실(서울특별시 중구 부로동 19번지 전화 773-8148) 및 해당구청 지하교통과 상·하(시) 건설과(상암시구간)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명세: 공람장소내 비정함.
- 사. 관련도면: 공람장소에 비치함.

용과 위치를 서울특별시 면적사무차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1.10.15  
서울특별시청

- 1. 조력제정의 취지  
도시철도법의 제정(법률 제3336호, 90.12.31)과 특별시행령의 제정(대통령령 제13434호, 91.7.25)에 따라 특별 및 특별자치인원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조력제정(안) 1별첨
- 3. 의견 제출  
이 조력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1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청(지하철건설본부 전담2부실 773-69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학교 시설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서울특별시공고제1991-281호

지하부분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력제정(안)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력제정(안)에 관하여 시정 예정 기일 관련 기일을 통고하고 그 주요 내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  
기준에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제4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피"라 함은 도시철도 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함)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 "최소여유폭"이라 함은 천공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과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3. "보호층"이라 함은 굴착 등 타 행위로 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4. "한계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로서, 그 심도 이하에서는 입체이용저해율이 산출되지 않는 토피의 한계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보상대상지역은 현황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 다음 각호와 같이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및 농지, 임지로 분류한다.

- ① "고층시가지"라 함은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지역 등을 말한다(예상용적률:800% 이상).
- ② "중층시가지"라 함은 11~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고층시가지로 변화하고 있는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지역 등을 말한다(예상용적률:550~750%).

③ "저층시가지"라 함은 4~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 주거지역 등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공·상이 혼재된 지역을 말한다(예상용적률:200~500%).

④ "주택지"라 함은 3층 이하 건물의 순수주택가인 주거, 녹지, 공업지역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예상용적률:100% 내외).

⑤ "농지·임지"라 함은 농지·임지가 유효이용인 녹지지역 등으로 사회, 경제 및 환경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제4조(보상대상 범위) ①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함)대상 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범위와 입체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면적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 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입체적범위"는 제1호규정의 평면적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까지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물인 경우 각 6m, 개착구조물인 경우 각 0.5m로 한다.
- ②병렬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인근토지 이용상황, 토지가격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의 경제적인 층수의 규모

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할 때 건축가능한 층수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층수가 당해 지역 내에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범위 내의 층수

제6조(건축가능층수) ①건축가능층수는 구조형식, 지반상태, 토피 등에 따라 (별표 1)에 의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가능층수는 보상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표단면에 의거 산정한 것으로 건축 등 행위시에는 해당토지의 지반여건, 건축 등 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①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지해율과 지하부분이용에 대한 지해율 및 기타 이용에 대한 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②건물 등 이용에 대한 지해율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left\{ \alpha \times \frac{\text{가}}{\text{나}} \right\}$$

1. "α"는 건물 등 이용에 의한 이용률로서 (별표 2)에서 산출한다.
2. "가"는 지해율에 의한 총별효용비율로서 (별표 3)에서 산출한다.
3. "나"는 최유효 건물층에 의한 총별효용비율로서 (별표 3)에서 산출한다.

③지하부분이용에 대한 지해율은 (별표 2)에서의 지하이용률(β)에 (별표 4)에서의 심도별 지하이용효율(p)을 곱하여 구한다.

④기타 이용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모두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는 (별표 2)에서의 γ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 어느 한쪽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최유효건물층 및 규모로 사용(이하 "최유효사용"이라 함)하거나 이에 유사한 기

존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한다.

• 입체이용저해율 = 최유효 상대의 나지로 본 건물 및 지하이용저해율 × 노후율 + 기타이용에 대한 지해율.

• 노후율 =  $\frac{\text{해당건물의 유효 경과연수}}{\text{해당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  (별표 5)

단, 기존건물이 최유효 사용에 현저히 미달되거나 노후 정도 및 관리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관행상 토지만의 가격으로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지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8조(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한시가지는 40m, 중층시가지는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농지·임지는 20m로 한다.

제9조(지하보상비 산정 및 지급) ①지하보상비는 도시철도법시행령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되 지가공시및토지등외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 보상비 = 토지의 단위면적당 최정가액 × 입체이용저해율 × 구분지상권설정면적

②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거 산출된 지하보상비가 5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필지당 500,000원을 지급한다.

제10조(구분지상권 설정 및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①지하부분 사용을 위하여 보상완료한 토지의 구분에 대하여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 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한다.

②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 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관용지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

제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1991. .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축가능 층수 1. 비닐:패턴별 구분 판단 가. 풍화토(PD-2)패턴 (단위:층)							
토피(m)	10	15	20	25			
건축구분							
지 상	12	15	13	22			
지 하	1	2	2	3			
나. 풍화암(PD-3)패턴 (단위:층)							
토피(m)	10	15	20	25	30		
건축구분							
지 상	17	19	21	23	25		
지 하	1	2	2	3	4		
다. 연암(PD-4)패턴 (단위:층)							
토피(m)	10	15	20	25	30	35	
건축구분							
지 상	19	24	28	30	30	30	
지 하	1	2	3	3	4	4	
라. 경암(PD-5)패턴 (단위:층)							
토피(m)	10	15	20	25	30	35	40
건축구분							
지 상	30	30	30	30	30	30	30
지 하	1	2	3	4	5	6	7
2. 개 확 (단위:층)							
토피(m)	5	10	15	20			
건축구분							
지 상	7	12	19	19			
지 하	1	2	2	2			

〈표 2〉 입체이용률 배분표					
해당지역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 택 지 (택지예정지)	농지·임지
용적률	800% 이상	550~750%	200~500%	100% 내의	100% 이하
이용률구분	(670~1000%)	(450~1000%)	(200~1000%)	(60~300%)	(80~150%)
건물 등 이용률 ( $\alpha$ )	0.80	0.75	0.75	0.7	0.8
지하이용률 ( $\beta$ )	0.15	0.10	0.10	0.15	0.10
기타이용률 ( $\gamma$ )	0.05	0.15	0.15	0.15	0.10
( $\gamma$ )의 상하 배분비율	1:1 -2:1	2:1 -3:1	2:1 -3:1	2:1 -3:1	3:1-4:1
주 1) 본표의 이용률 및 용적률의 구분은 통상적인 표준을 표시한 것으로 여건에 따라 이용률 및 배분비는 약간의 보정을 할 수 있음. 2) 용적률은 현신력 이용을 상정한 경우임. 3) ( ) 내의 용적률은 서울특별시조례상의 허용치임.					



〈별표 3〉 층별 효용비율표

층	고층 및 중층시가지		지 중 시				주 택 지
	A 형	B 형	A 형	B 형	A 형	B 형	
20	35	43					
19	35	43					
18	35	43					
17	35	43					
16	35	43					
15	35	43					
14	35	43					
13	35	43					
12	35	43					
11	35	43					
10	35	43					
9	35	43	42	51			
8	35	43	42	51			
7	35	43	42	51			
6	35	43	42	51			
5	35	43	42	51	36	100	
4	40	43	45	51	38	100	
3	46	43	50	51	42	100	
2	58	43	60	51	54	100	100
지상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하 1	44	43	44	44	46	48	-
2	35	35	-	-	-	-	-

- 주 1. 본표의 지수는 건물가격의 일체분포와 토지가격의 일체분포가 동일하다고 전제하였음.
- 2. 본표에 없는 지수는 본표의 경향과 주위상태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 3. 본표의 지수는 각군의 대략적인 표준을 표시한 것이므로 여건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음.
- 4. A형이란 상층부 일정층까지 입묘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유형이며, B형이란 2층 이상의 동일한 입묘수준을 나타내는 유형임.

표 10-10. 200mm 이하의 수직 보강률

보강률 (%)	45m		55m		50m			20m	
	P	$\beta \times P$	P	$\beta \times P$	P	$\beta \times P$		P	$\beta \times P$
		0.15 $\times P$		0.10 $\times P$		0.15 $\times P$	0.10 $\times P$		
0-5%간	1.000	0.150	1.000	0.100	1.000	0.100	0.150	1.000	0.100
5-10%간	0.875	0.133	0.875	0.088	0.833	0.083	0.125	0.750	0.075
10-15%간	0.750	0.113	0.714	0.071	0.667	0.067	0.100	0.600	0.060
15-20%간	0.625	0.094	0.571	0.057	0.500	0.050	0.075	0.500	0.050
20-25%간	0.500	0.075	0.429	0.043	0.333	0.033	0.050		
25-30%간	0.375	0.056	0.286	0.029	0.167	0.017	0.025		
30-35%간	0.250	0.038	0.143	0.014					
35-40%간	0.125	0.019							

1. 200mm 이하의 수직 보강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건축구조기준」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참조한다.  
 2. 보강률 5%, 10%, 15%, 20%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보강률 5% 이하의 수직 보강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건축구조기준」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참조한다.  
 4. 이 표의 수직 보강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건축구조기준」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참조한다.

30-10

표 10-10

A

B

1991.10.15

〈별표 5〉 건물내용 연수표				
(단위 : 년)				
용 도	구 조	철근 및 철근	벽돌조	철골조
		철골콘크리트	석 조	
○ 사무실, 청사, 은행, 학교, 유치원, 교회, 공회당, 사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방송국, 역사, 연구소, 실험실, 수피마켓, 공항터미널, 체육관, 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2) 지붕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3) 벽이 콘크리트, 벽돌, 블록, 돌 등으로 된 것 (4) 벽이 기타인 것 ○ 주택, 별장, 아파트, 점포, 여관, 호텔, 목욕탕, 요리점, 극장, 연주장, 무도장, 카바레, 오락장, 구락부, 영화제작소, 병원, 진료소, 기숙사, 요양소, 변전소, 발전소, 경유장, 차고, 송수신소, 실내스케이트장, 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2) 지붕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3) 벽이 콘크리트, 벽돌, 블록, 돌 등으로 된 것 (4) 벽이 기타인 것 ○ 공중목욕탕, 어시장, 창고, 화물유급소, 석남고, 공장, 작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2) 지붕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3) 벽이 콘크리트, 벽돌, 블록, 돌 등으로 된 것 (4) 벽이 기타인 것 ○ 간이주택, 간이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2) 지붕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3) 지붕이 기타인 것	60	55		
	60/55	55/50	50	
				50
				50/45
	55	50		
	55/50	50/45		45
				45/40
	50	45		
	50/45	45/40		40
				40/35
			40	
			40/35	
		35/30		

**구 고 시**

●**용산구고시제1991-17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고시**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고시 제3호(91.1.30)(기존학교인정고시) 및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한편도면은 용산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련인들에게 보입니다(전화: 710-3385).

1991. 10. 11

용 산 구 청 장

-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고시조서: 별첨
- 도면: 생략

지 적 고 시 조 서

학교구분	학교명	소재지	구분	건 물 현 황			지 적 (㎡)	비 고
				교사동 동/㎡	부속건물 동/㎡	계 동/㎡		
국민학교	서울보광 국민학교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5- 13번지 일대	당초	4동/ 7,454	13동/ 651	17동/ 8,105	(9필지) 9,896.0	
			금회	4동/ 7,821.04	11동/ 580.09	15동/ 8,441.43	(12필지) 9,848.1	감 47.9
"	서울삼광 국민학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190-2 번지 일대	당초	3동/ 7,047.05	13동/ 943.59	16동/ 7,990.64	(4필지) 15,382.6	
			금회	3동/ 6,150.57	13동/ 848.75	15동/ 6,999.32	(5필지) 11,353.2	감 1,029.4
"	서울용산 국민학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번 지 일대	당초	2동/ 4,621.87	11동/ 535.37	13동/ 5,157.24	(3필지) 14,214.2	
			금회	2동/ 5,004.87	5동/ 171.32	7동/ 5,175.49	(3필지) 14,241.2	증 27.0
"	서울청파 국민학교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42번 지 일대	당초	4동/ 6,613.31	7동/ 138.25	11동/ 6,751.56	(2필지) 19,766.6	
			금회	4동/ 6,752.82	7동/ 254.14	11동/ 7,006.96	(1필지) 19,453.6	감 310
"	서울금양 국민학교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126번 지 일대	당초	5동/ 6,803.87	8동/ 255.16	13동/ 7,059.03	(11필지) 13,143.4	
			금회	5동/ 6,874.86	6동/ 178.84	11동/ 7,053.7	(8필지) 12,965.4	감 178.0
"	서울이태원 국민학교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406 번지 일대	당초	3동/ 4,717.2	12동/ 219.4	15동/ 4,936.6	(7필지) 9,909.0	
			금회	2동/ 3,806.86	7동/ 1,241.41	9동/ 5,048.27	(11필지) 11,674.0	증 1,765

학교구분	학교명	소재지	구분	건물현황			면적 (㎡)	비고
				교사동 동/㎡	부속건물 동/㎡	계 동/㎡		
국민학교	서울서빙고국민학교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31번지 일대	당초	3동/ 4,996.32	7동/ 221.7	10동/ 5,218.02	(4필지) 20,688.0	
			금회	3동/ 5,124.42	7동/ 218.73	10동/ 5,343.15	(7필지) 22,512.7	중 844.7
" "	서울후암국민학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39번지 일대	당초	2동/ 4,516.0	10동/ 360.0	12동/ 4,876.0	(6필지) 17,571.0	
			금회	2동/ 5,612.34	11동/ 458.73	13동/ 6,071.07	(5필지) 12,918.7	중 1,347.6
중고등학교	서울용산중고등학교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1번지 일대	당초	8동/ 17,992.0	13동/ 1,255.0	21동/ 19,247.0	(8필지) 48,627.9	중 학교 병설
			금회	8동/ 18,088.76	13동/ 1,254.22	21동/ 19,342.98	(11필지) 49,367.6	감 260.3
" "	서울용산공업고등학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번지 일대	당초	2동/ 6,909.7	9동/ 13,207.0	11동/ 20,116.7	(4필지) 17,645.68	
			금회	2동/ 6,105.14	10동/ 13,358.53	12동/ 19,463.67	(4필지) 17,386.9	감 258.78
" "	서울수도여자고등학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168번지 일대	당초	4동/ 6,876.0	5동/ 3,983.0	9동/ 10,859.0	(7필지) 14,312.9	
			금회	4동/ 7,398.0	9동/ 3,799.0	13동/ 11,197.0	(6필지) 13,738.2	감 574.7
" "	서울선린산업고등학교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13번지 일대	당초	5동/ 15,671.4	17동/ 1,772.0	22동/ 17,443.4	(13필지) 45,360.9	중 학교 병설
			금회	5동/ 15,671.4	17동/ 1,772.0	22동/ 17,443.4	(12필지) 44,785.4	감 575.5

토 지 조 서

학교명 : 서울보광국민학교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당초인정 (㎡)	금회인정 (㎡)	실제이용 상 광	소유자	비고
이태원동	15-13	학	4,410	4,410	4,394.5	교사대지및운동장	서울특별시	-15.5
" "	15-2	"	1,652	1,652	1,652.0	"	"	
" "	15-99	대	87		67.4	운동장	용산구	+67.4
" "	16-1	학	188	188	122.3	교사대지및운동장	서울특별시	-65.7
" "	18-1	"	136	136	115.7	"	"	-20.3
" "	18-3	"	130	130	116.8	운동장	"	-13.2
" "	18-59	대	9		9	"	용산구	+9
" "	98-6	화	641	641	641.0	교사대지및운동장	서울특별시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당초인정 (㎡)	금회인정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이태원동	100-6	학	936	936	936.0	교사대지및운동장	서울특별시	
"	140-2	학	1,794	1,794	1,738.7	"	"	-55.3
"	140-1	도	9.9	9				-9
"	140-3	대	25.8		25.8	"	"	+25.8
"	137-23	대	6,922.6		28.9	"	"	+28.9
계			16,941.3	9,896	9,848.1			-47.9

학교명 : 서울삼광국민학교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당초인정 (㎡)	금회인정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후암동	190-1	대	1,051.2	1,051.2	50.4	교사대지및운동장	서울특별시	-1,000.8
"	190-2	학	14,254.4	14,254.4	14,074.0	"	"	-180.4
"	188-2	학	73.7	73.7	73.7	운 동 장	경 성 부	
"	299-7	학	3.3	3.3			"	-3.3
"	184-2	도	63.8		52.5	운 동 장	"	+52.5
"	190-11	학	106.8		102.6	"	서울특별시	+102.6
계			15,553.2	15,382.6	14,353.2			-1,029.4

학교명 : 서울용산국민학교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당초인정 (㎡)	금회인정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한강로2가	1	하	13,814.9	13,814.9	13,814.9	교사대지및 운동장	국(한교부)	
"	2-188	하	315	315	266.4	"	서울시교육위원회	-48.6
"	2-2	대	84.3	84.3			국(재무부)	-84.3
"	2-89	철	3,666.4		159.9	"	국(철도청)	+159.9
계			17,880.6	14,214.2	14,241.2			+27

학교명 : 서울청파국민학교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당초인정 (㎡)	금회인정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청파2가	1-42	학	19,476.6	19,476.6	19,456.6	교사대지및운동장	서울특별시	-20
"	1-164	대	290	290		"	"	-290
계			19,766.6	19,766.6	19,456.6			-310

학교명 : 서울금암국민학교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당초인정 (㎡)	금회인정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효창동	126-4	학	10,683.6	10,683.6	10,648.7	교사대지및운동장	경성부학교조합	-34.9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당초인정 (㎡)	금회인정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요광동	126-17	학	51.6	51.6	51.6	운 동 장	국(문교부)	
"	126-21	학	321.6	321.6	321.6	교사대지및운동장	서울특별시	
"	5-62	학	948.8	948.8	321.6	교사대지및운동장	국(문교부)	
"	89-1	도	72.7	113.4			서울특별시	-113.4
"	89-4	도	40.7		40.7	운 동 장	"	+40.7
"	88-1	학	859.5	859.5	859.5	교사대지및운동장	"	
"	88-2	대	10.9	10.9	10.9	운 동 장	"	
"	88-6	도	83.6	83.6	83.6	교사대지및운동장	용 산 구	
"	88-3	대	44.3	44.3			서울특별시	-44.3
"	88-4	대	24.1	24.1			"	-24.1
"	88-5	대	2	2			"	-2
계			13,143.4	13,143.4	12,965.4			-178

학교명 : 서울남부국민학교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당초인정 (㎡)	금회인정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이태원동	406	학	8,847	8,847	8,847	교사대지및운동장	서울특별시	
"	420-1	"	142		26.7	운 동 장	"	+26.7
"	429-1	"	89		17.1	"	"	+17.1
"	430	"	76	76	25.9	"	"	-50.1
"	433	"	228	228	228	"	"	
"	434	"	60	60	60	"	"	
"	435	"	136	136	136	"	"	
"	441	"	403	403	403	"	경 성 부	
"	441-1	"	159	159	159	교사대지및운동장	서울특별시	
"	446	대	89		89	"	서대문병원 동기독교초 신김리교회 양주삼	+89
"	597	학	1,682.3		1,682.3	운 동 장	국	+1,682.3
계			11,911.3	9,909	11,674			+17.65

학교명 : 서울서빙고국민학교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당초인정 (㎡)	금회인정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서빙고동	4-54	학	628	628	628	교사대지및운동장	국(문교부)	
"	4-60	"	2,466	2,466	2,466	"	"	
"	4-61	"	807	807	807	"	"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당초인정 (㎡)	금회인정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서빙고동	235-1	학	16,767	16,767	16,600	교사대지및운동장	국(철도청)	-167
"	4-80	학	152		152	"	서울특별시	+152
"	4-81	도	281		279.7	"	"	+279.7
"	235-11	잡	4,278		580	운 동 장	국(철도청)	+580
계			25,379	20,668	21,512.7			+844.7

학교명 : 서울후암국민학교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당초인정 (㎡)	금회인정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후 암 동	339-11	학	314.1	158.7	177.1	교사대지및운동장	서울특별시	+18.4
"	339-19		339-11 합병	155.4			"	-155.4
"	산1-110		30-138 합병	5,963			"	-5,963
"	산1-107		"	192			"	-192
"	산1-116		"	3,207			"	-3,207
"	산1-123		"	1,895			"	-1,895
"	30-138	학	10,773		9,702	"	국(문교부)	+9,702
"	30-84	대	48,674.4		2,576	"	국(산림청)	+2,576
"	30-95	학	360.6		347.6	"	"	+34
"	산1-172	임	101		59	운 동 장	국(문교부)	+5
계			60,311.1	11,571.1	12,913.7			+1,347.6

학교명 : 서울용산중고등학교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당초인정 (㎡)	금회인정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용 산 동 2가	산2-4	임	165	165.3		교사부지및운동장	국(문교부)	-165.3
"	1	학	35,763.4	3,912.1	35,668.4	"	서울특별시	-8,243.7
"	1-1578	"	166.3	166.3			"	-166.3
"	9-27	"	1,443	1,443			"	-1,443
"	9-28	"	1,271.7	1,271.7			"	-1,271.7
후 암 동	260-2	"	1,285	895.9	1,285	"	"	+389.1
"	260-3	"	389.1	389.1			"	-389.1
"	415-68	"	384.5	384.5	384.5	"	국(문교부)	
용 산 동 2가	1-1623	"	11,029.7		11,029.7	"	서울특별시	+11,029.7
계			51,897.7	48,627.9	48,367.6			-260.3



학교명 : 용산공업고등학교								
위 치	지 번	지 목	지 력 (㎡)	당초인정 (㎡)	금회인정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한강로3가	65-209	학	11,767.2	11,767.28	11,767.2	교 사 부 지	서울특별시	-0.08
	65-3	학	41.5	41.5	41.5	운 동 장		
	65-4	"	267.8	267.8	267.8	"	"	
	65-527	철	5,569.1	5,569.1	5,310.4	교사부지및운동장	"	-258.7
계			17,645.6	17,645.6	17,386.9			-258.78
학교명 : 수도권여자고등학교								
위 치	지 번	지 목	지 력 (㎡)	당초인정 (㎡)	금회인정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후암동	192-29	학	6	6	6	교사부지및운동장	문 교 부	
	168	"	11,539.8	11,539.8	11,539.8	"	경 상 부	
	174-1	"	1,195	1,195	1,195	"	서울특별시	
	185-12	대	170.2	170.2				-170.2
	185-13	"	179.5	179.5				-179.5
	185-16	"	38	38				-38
	185-17	"	216.8	216.8				-216.8
갈월동	51-7	학	902.9	902.9	902.9	"	경 상 부	
	51-43	대	64.7	64.7	64.7	"		
	51-8	"	29.8		29.8		청과동2가 71-25 이덕순	+29.8
계			14,342.7	14,312.9	13,738.2			-574.7
학교명 : 서울신원상업고등학교								
위 치	지 번	지 목	지 력 (㎡)	당초인정 (㎡)	금회인정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청과동3가	131-2	학	36,019.8	36,019.8	36,019.8	교사부지및운동장	서울특별시	
	134-6	"	26.4	26.4	26.4	"	문 교 부	
	134-4	"	3,065.9	3,065.9	3,065.9	"	서울특별시	
	134-56	"	10.2	10.2	10.2	"	문 교 부	
	131-4	"	33.1	33.1	33.1	"	서울특별시	
	117-10	"	39.7	39.7	39.7	"		
	117-1	"	201.7	201.7	201.7	"	문 교 부	
	117-8	"	43	43	43	"	서울특별시	
	산3-3	임	86	86	86	"		
	132-1	학	646.9	646.9	646.9	"	계 구 부	
	133-1	"	4,529.7	4,529.7	4,529.7	"	문 교 부	
	118-263	"	503.1	503.1	83	"		-420.1
	118-160	"	155.4	155.4		"	서울특별시	-155.4
계				45,360.9				

**구 공 고**

● 구로구공고제1991-115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구로구 도시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장소: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나. 공람기간: 1991.10.14~10.28(14일간)

다. 관련도서: 공람장소 비치내용과 같음.

1991. 10. .

구로구청장

○ 도시계획시설 입안내용

구분	도시계획(안)	위치	규모	비고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구로구 개봉동 산 53-3 일대	11,577㎡	개웅국민학교
"	도로결정	개봉동 425-3~273-3	폭 6m 연장 55.5m	학교진입로
"	오류단원공원변경	구로구 오류·개봉·천왕동	393,440㎡ 390,540㎡	감 2,900㎡
"	개웅중학교변경	구로구 개봉동 산 55-2 일대	10,924㎡ 10,872㎡	도로신설저속 부분 감 52㎡

● 구로구공고제1991-116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에 동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1.10. .

구로구청장

인가일자	양도업종및 면허번호	양도자			양수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91.10.11	설비 89-서울 12-82	대진공조 설비	구로구 신도 림동 413-10	양재봉	대진공조 설비(주)	구로구 신도 림동 413-10	양재봉

● 서대문구공고제1991-11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891호(87.12. 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되고 서대문구고시 제16호(89. 6.26)로 지적승인된 아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본 도시계획사업(도

로) 실시계획안 내용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주덕과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1.10.12

서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1991.10.12~1991.10.25

나. 공람내용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비 고
홍제동 294-46 (의주로-재개발 홍제11구역간)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도로개설 B=15m L=98m	홍제 제11주택지 량 재개발조합장 조갑현	91.10~91.12	비행정청도 사계획사업

다. 관계도서: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면 및 소유  
권 이외의 권리명세:별첨

토 지 조 서

연번	지 번	지 목	면 적	수 용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계인		비 고
				지 번	면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홍제동 294-46	천	15,296㎡	홍제동 294-46	1,470㎡		서울특별시			

사 령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인사교류

●1991년 10월 14일자

영 제374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판 경	도시경관과	서부건설사업소	지방토목기사
이 규 당	도봉구전출	도봉구	지방건축기사
이 건 기	동대문구전출	동대문구	"
이 병 훈	도시경관과	감사 1 담당관	"
정 상 진	"	계 개 발 과	지방토목 사보
완 영	"	은 명 구	지방전기기사보
박 국 현	시의회사무국 의정과	건축지도과	지방건축기사보
		위생처리장	지방기계기사보

5급기술직 공무원 인사교류

●1991년 10월 14일자

영 제376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진 관	도시경관과 경관기획계장	종 로 구	지방건축기사좌
박 병 인	종로구전출	구 로 구	"
김 경 수	도봉구 "	종 합 건 설 부	"
이 원 훈	구로구 "	도 봉 구	"
박 성 수	영등포구 "	시 립 대 학 교	"

성 명	발령 사항	원 부서	직 급
이 석 도 신 장 선	강남구 진출 종합건설본부	영등포구 강남구	지방건축기과
3급기술직 공무원 징계처분			
●1991년 10월 12일자			영 제377호
성 명	발령 사항	원 부서	직 급
이 원 근	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2호 에 의하여 감부 3월에 처함.	경 신 병 원	지방의무부기과
8급이하 기술직공무원 파견근무 명령			
●1991년 10월 15일자			영 제378호
성 명	발령 사항	원 부서	직 급
이 원 국	청소1과 파견근무를 명함. (91.10.15~별도지시시까지)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지방기계기과
기술직 5급공무원 파견근무 명령			
●1991년 10월 15일자			영 제379호
성 명	발령 사항	원 부서	직 급
이 동 오	청소1과 파견근무를 명함. (91.10.15~별도지시시까지)	청 소 2 과	지방기계기과
국무 국외여행 명령통보			
●1991년 10월 15일자			
여 행 자			
소 속	직 명	성 명	여 행 국
부녀복지과	행정 7 급	김 영 진	일 본
			여행기간
			91.10.20 ~10.24 (5일간)
			여행경비
			초청국 부 담 및 시 비(국외여 비규정에 함)
			여행목적
			일본 오오이파현 지 사 초청 제10회 오오 이파현 "종와배" 행 사 참가